

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공모

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.

2010년 5월 3일

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

1. 사업개요

▣ 정의

-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존제품의 성능·품질개선, 공정개선 등에 대해 필요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

▣ 목표

- 대학·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
- 기존 제품의 성능향상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 제고

▣ 주요내용

- 참여방식 및 지원대상
 - 산+학, 산+연, 산+학+연
 - 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 또는 벤처기업)과 대학(또는 연구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
 -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형태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.
- 지원분야
 - 기계·금속, 디지털콘텐츠, 바이오·나노, 소프트웨어, 전기전자, 방송·정보통신, 환경·에너지

○ 지원기간 및 규모

- 지원기간 : 2년(24개월) 이내
- 시지원금 : 과제당 2억 원 이내/년 (30개 과제 내외 지원)
-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급하며, 1차년도 종료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

○ 지원내용

- 기존제품 품질·성능 향상 기술개발
 -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나 용도면에서 완전히 다른 제품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술개발
 - ‘기존제품’은 매출이 발생한 제품에 한하며 매출액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
 - 제품정밀도향상, 품질관리 R&D 등
- 제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
 - 생산공정과 납품/유통 등 물류방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또는 크게 개선된 방식을 목적으로 한 기술개발
 - 자동화생산공정 개선, 유통 R&D(RFID, 무선통신 등 IT를 활용한 유통시스템 등) 등

■ 기대효과

- 기업의 제품혁신, 제품개발 프로세스 혁신 도모
-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
-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의 육성

2. 신청자격

▣ 지원자격

○ 주관기관

- 본교 또는 본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서울에 소재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중 벤처기업(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) 또는 이노비즈기업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)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

○ 협력기관
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
- 서울시에 본교(분교)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(분교)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
- 종합병원,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,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
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·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

○ 참여기업

-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중 벤처기업(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) 또는 이노비즈기업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)

○ 과제책임자

-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,
-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(정년보장트랙)로 하며, 소속 학부(학과)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
-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상기된 주관기관(연구기관)에 소속된 전임연구원
- 상기된 주관기관(기업)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이사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,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
 - ※ 운영요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수행 중 과제책임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과제책임자 선정 시 유의할 것

○ 부문책임자

-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(정년보장트랙), 전임연구원,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

※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('10.4.30개정) 및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관리지침('10.5.3개정) 참조

■ 참여제한 및 결격사유

구분	참여 제한 및 결격사유
<p>참여기관 공통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2. 주관기관, 협력기관, 참여기업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(참여제한) 대상인 경우 3.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가 2010년에 공모하는 동 사업에 과제책임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(단,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.) 4. 과제책임자,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평가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)
<p>기업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수마감일 현재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이 아닌 경우(확인서 유효기간 기준) 2.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3. 화의·부도·법정관리 중인 경우(단, 법정관리·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 4. 부채비율 1000% 이상인 경우 5.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 7. 2009년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

* 신청 이후라도 참여제한 및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·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3. 지원원칙 및 참고사항

▣ 일반사항

-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/W적 지원에 역점을 두며, H/W적 지원은 지양
- 서울시지원금은 총사업비(서울시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출자의 합)의 75% 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 - 민간부담금(민간부담현금 및 민간부담현물) 출자는 총사업비의 25% 이상이어야 하며, 참여기관의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5% 이상이어야 함

<사업비 구성>

구분	시지원금 (A)	민간부담금 (B)	사업비 (A+B)	민간부담현금
비율	사업비의 75% 이내	사업비의 25% 이상	시지원금+민간부 담금	시지원금의 5% 이상
<예시>	200백만원	67백만원이상	267백만원 이상	10백만원 이상

* 사업비=시지원금+민간부담금

* 민간부담금=민간부담현금+민간부담현물

- 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며, 예상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활용의사와 실시능력을 구비하여야 함.
 - 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의 기존 제품(공정) 개선이 본 사업의 목적이므로, 과제선정 이후 기업의 변경을 불허함. 따라서 신증을 기하여 컨소시엄 구성 요망
-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(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제외)을 수행중인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함. 단, 1개 기업은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에 연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- 동일한 과제책임자가 2010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세부 사업별(특허기술 상품화 지원사업,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,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)로 사업계획을 중복신청한 경우 최종적으로 1개 과제만 선정·지원대상이 됨.

■ 사업비 산정 관련

○ 인건비 산정 관련

-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이 ‘지식서비스 분야’ 또는 ‘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’에 해당하는 경우,
 - 참여기관의 인건비를 사업비 중 현금(시지원금+민간부담현금)의 70%까지 계상 가능하고
 - 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시작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에 한해 신청인건비의 50%까지 현금 계상 가능함
 - 단, 신청과제의 해당 분야 관련 여부, 인건비 계상의 적정성 등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한하며,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삭감 및 감점대상이 될 수 있음.
 - 자세한 내용은 「사업신청서 8. 당해연도 사업비」작성 요령 및 「관리지침 6. 사업비산정」참고
- 서울시산학협력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특허전략 컨설팅을 의무화함.
- 사업신청서 작성 시 관련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(주관기관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당해연도 사업비 현금의 5% 이내로 계상)하고 선정 이후 협약 전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.

■ 기술료 징수 및 납부

- 주관기관은 과제의 성공종료를 위해 최종평가일 전에 참여기업(실시기업)으로부터 정액기술료 전액 징수 후 전담기관에 납부 및 보고를 완료해야 함.
- 최종평가일 전에 기술료 전액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대상액의 40% 감면
- 주관기관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
- 주관기관은 최종평가일 전에 반드시 참여기업(실시기업) 대표와 실시계약 체결 및 정액기술료 전액을 징수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함(전담기관 납부 면제).
 - 정액기술료는 참여기업(실시기업)의 규모에 따라 아래의 기술요율 적용하여 산정

- 대기업 : 총 시지원금의 20%
- 중소기업 : 총 시지원금의 10%
- 대·중소기업 혼재 : 실시기업의 비율

○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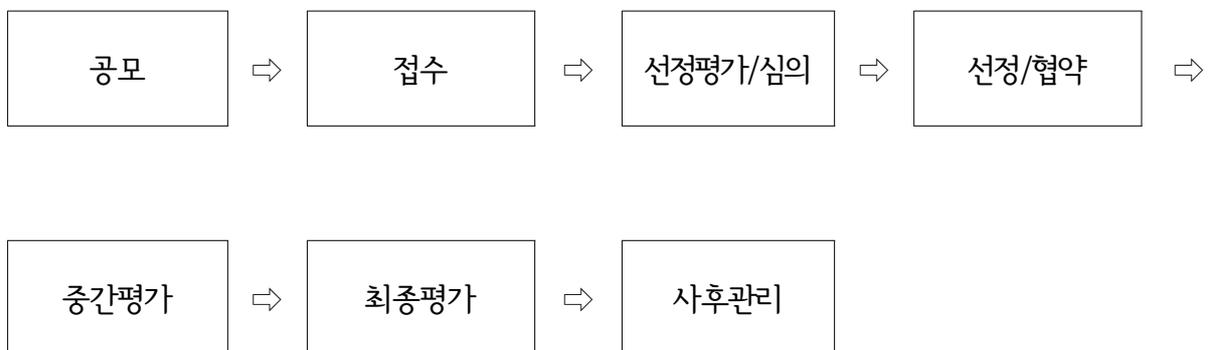
- 주관기관은 최종평가일 전에 반드시 정액기술료(총 시지원금의 10%) 전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함.

▣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

- 우수과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과제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최종 선정된 과제의 경우 사업수행 중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% 이내의 과제를 중단 조치하여 상위에 속하는 과제에 인센티브로 시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음.
- 중간 및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에 대해 정산이 면제될 수 있음(주관기관이 자체정산보고서만 제출).
-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최종평가 결과 우수종료과제(90점 이상)는 전담기관에 납부한 기술료를 사업화 장려비로 교부받을 수 있음.

4.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

▣ 사업 추진절차



■ 추진일정

- 2010년 5월 3일(월) : 사업공고
- 2010년 7월 ~ 8월 : 선정평가
- 2010년 9월 : 지원대상과제 확정,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(예정)
 - ※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선정평가

■ 선정평가 절차

- 선정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진행됨
 - 1차 평가(100점) : 기업평가(25점) + 서면평가(75점)
 - 2차 평가(100점) : 기업평가(25점) + 발표평가(75점)
- 1차 평가는 접수현황에 따라 필요시 실시하며, 최종 지원대상 과제수의 2배수 이내로 2차 평가 대상을 선정함
- 1차 및 2차 평가의 종합평점(평가점수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)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2차 평가 대상 및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주관기관 등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

<선정평가 주요 절차>

구 분	주요 내용
기업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평가 점수(25점)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시 반영됨 ○ 신청과제당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, 주력 사업체(1개 기업)에 대해서만 평가함(단,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주관기관을 평가). ○ 기업평가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출액, 자기자본금액, 부채비율
↓	
1차 평가 (필요시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평가(25점) + 서면평가(75점) ○ 서면평가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(목표설정의 타당성, 사업 추진역량, 시장성 등)
↓	
2차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평가(25점) + 발표평가(75점) ○ 발표평가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사업추진역량,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↓	
서울시산학연 정책위원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차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지원대상 확정

▣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

○ 기업평가 항목 및 배점

(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)

구분	평가항목	배점
매출액 (10)	매출액 20억원 이상	10
	매출액 15억원 ~ 20억원 미만	7
	매출액 10억원 ~ 15억원 미만	4
	매출액 10억원 미만	1
부채비율 (10)	부채비율 100% 미만	10
	부채비율 100% 이상~150% 미만	8
	부채비율 150% 이상~200% 미만	6
	부채비율 200% 이상~250% 미만	4
	부채비율 250% 이상	2
자기자본금액 (=자본총계) (5)	자기자본금액 8억원 이상	5
	자기자본금액 6억원 ~ 8억원 미만	4
	자기자본금액 4억원 ~ 6억원 미만	3
	자기자본금액 2억원 ~ 4억원 미만	2
	자기자본금액 2억원 미만	1
합계		25

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본총계)×100%

○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항목	배점
목표설정의 타당성 (25)	기업의 기술적 니즈와의 관련성	10
	목표설정의 구체성, 명확성	10
	기술·시장여건 분석의 타당성	5
사업추진 역량 (25)	추진주체의 사업화역량 (R&D성과의 사업화경험, 지적권 보유 등)	10
	기술수준 및 경쟁력	10
	사업비구성·배분의 적절성	5
시장성 (25)	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	15
	제품마케팅판로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	10
합계		75

○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

구분	평가항목	배점
사업계획의 적정성 (15)	목표설정의 구체성, 명확성	10
	기술·시장여건 분석의 타당성	5
기술성 (15)	기업의 기술적 니즈와의 관련성	10
	기술의 우수성, 혁신성	5
사업추진 역량 (20)	추진주체의 사업화역량 (R&D성과의 사업화경험, 지적권 보유 등)	10
	참여기업의 경영능력(경영전략, R&D능력 등)	5
	사업비구성·배분의 적절성	5
수익창출 가능성 (25)	개선대상 제품·공정혁신 기대효과	10
	경제적 기대효과(매출액 증대, 원가절감 효과 등)	10
	제품마케팅판로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	5
합계		75

▣ 동점과제 처리 기준

- 지원대상 선정시 과제책임자, 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, 여타 선정조건이 동일할 시 필요에 따라 아래의 순위로 우대(동점과제 중 해당과제에 우선순위 부여)할 수 있음
 - 1순위 : 사업 신청 기업이 「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」의 회원으로 등록된 과제
 - 2순위 :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최종평가 시 '우수'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
 - 3순위 :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개발성과를 기술이전한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

6. 사업 공모 및 접수

▣ 공모 및 접수기간 : 2010. 5. 3(월) ~ 6. 4(금) 16:00까지

- 2010. 6. 3(목) 18:00까지 인터넷 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 -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홈페이지(<http://seoul.mbd.kr>)를 통해 종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접수
- 2010. 6. 4(금) 16:00까지 우편·방문 접수 완료 (6. 3(목)까지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에 한함)

▣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

- 사업신청서 양식
 -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eoul.mbd.kr>)의 '사업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- 제출서류
 -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
 -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(인터넷 접수 시 발급)

- 사업신청서 10부(원본 1부 포함,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)
-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
- 작성방법
 - 한글파일 이름은 ‘10제품개선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.hwp’로 함
 - 예) 10제품개선_한국대_김서울.hwp/ 10제품개선_과기연구원_이사랑.hwp
- 접수처
 - <137-071>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성과확산팀 「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」담당자 앞

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신청서의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
- 사업신청서 작성 시 권고사항
 - 별첨서류를 제외한 사업신청서 총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을 권고함
 - 흑백으로 양면 출력하여 제본(별첨서류 함께 제본)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‘2010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’,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’,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’,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 규정’, ‘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관리지침’ 등의 자료를 참조
 -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(on-line) 접수 안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eoul.mbd.kr>)의 ‘사업공고’의 내용 참조
-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
 - 전화 문의(성과확산팀) : (02) 2149-1382, 1312
 - 온라인 문의 :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&A 코너 이용